

## 홍성의료원 심장초음파검사기 2세트 구매 입찰 공고

### 1. 입찰에 부치는 사항

- 입찰건명 : 홍성의료원 심장초음파검사기 2세트 구매 입찰 공고
- 규격 및 사양 : 사양서 등 첨부자료 참조
- 납품기간 :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
- 기초금액(VAT포함) : ₩480,000,000원(금사역팔천만원정)

### 2. 입찰 및 개찰의 일시와 장소

- 사양서(카달로그) 및 GMP/GIP 제출 : 2026년 7월 24일(금) 10:00 ~ 2026년 7월 29일(수) 10:00  
※ 사양서(카달로그) 및 GMP/GIP는 이메일(hsmc6114@hanmail.net)로만 제출 가능
- 입찰서제출 : 2026년 7월 29일(수) 10:00 ~ 2026년 7월 31일(금) 10:00
- 개찰일시 : 2026년 7월 31일(금) 11:00 이후  
(단, 전산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다소 지연될 수 있음)
- 개찰장소 : 홍성의료원 입찰담당관 PC

### 3. 입찰방식

- 전자입찰, 총액입찰, 제한경쟁입찰입니다.
- 투찰금액은 총액으로 하며 낙찰 시 단가 계약을 체결하고, 계약단가는 품목별 기초 단가에 기초금액 대비 낙찰율을 일괄 적용하여 단가 계약을 체결합니다.
-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.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,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<http://www.g2b.go.kr>)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인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,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.

### 4. 입찰참가자격(아래의 항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)

-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
- 해당 품명에 대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고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허가, 인가, 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, 면허, 등록, 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
- 사양서(카달로그) 및 GMP/GIP를 제출기한까지 이메일로 제출한 업체

-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업(업종코드 5309) 또는 의료기기 수입업(업종코드 5310) 또는 의료기기 판매업(업종코드 5312) 신고(허가)를 필한 업체
- 입찰참가자격 마감일시까지 초음파심장조영장치(세부품명번호 4220170102)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완료한 업체
-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**중소기업 확인서**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**소상공인 확인서**를 소지한 업체  
※<중소기업, 소상공인 확인서>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(<http://www.smpp.go.kr>)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발급일 등 관련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.

## 5.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

-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납부확약이 내용이 명시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.
-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.

## 6. 낙찰자 결정방법

-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$\pm 3\%$ 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각 업체가 추첨(2개씩 선택)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
- 최종낙찰자 선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(80.495%)이상으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(동일가격 낙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)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.  
\* 적격심사 :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(행정안전부 예규)
-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.
- 본 입찰 건은 단독이행만 가능하며 하도급 및 공동수급을 금합니다.
- 낙찰자는 낙찰에 따른 권리양도.양수를 할 수 없습니다.
-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.

## 7. 입찰무효

-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법률시행령 제39조,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.

## 8. 계약시 구비서류

-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-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
-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

-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
- 수입인지(1000만원 이상부터 해당)
- 수입품목일 경우 수입품목허가증 1부
- 통장사본 1부
- 계약내역서 1부
- 업종(물품)에 필요한 인허가증 사본 각 1부
- 기타 본원이 요구하는 서류
- 계약체결 후 : 계약이행 보험보증증권, 하자이행 보험보증증권, 지역개발공채 등

## 9. 기타사항

-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, 물품구매(제조)입찰유의서, 물품계약일반조건, 물품계약특수조건,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,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,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.
-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(☎1588-0800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.
- 입찰공고 사양서와 내용이 틀린 경우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이 되었을 경우, 입찰 및 계약은 무효가 되고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가할 수 있으니,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.
-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납품가능여부, 규격, 납기 등 제반 사항을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.
- 공고내용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 법률, 관련예규, 본원 관계규정 등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.
- **붙임1. 「의료법 시행규칙」제16조의5 별표2의3 허용 행위5에 의거 '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' 규정을 적용하여 대금을 지급합니다.(의약품 및 의료기기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).**
-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홍성의료원 재무과(041-630-6266), 규격 및 사양에 관한 문의는 시설안전과(041-630-604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26. 7. 23.

충청남도홍성의료원장

[붙임1.]

■ 의료법 시행규칙 [별표 2의3] <개정 2022. 9. 14.>

**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(제16조의5 관련)**

| 허용 행위                        | 허용 범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5. 대금결제<br>조건에<br>따른<br>비용할인 | <p>○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거래가 있는 날로부터 <b>3개월 이내</b>에 결제하는 경우: 거래금액의 <b>0.6퍼센트</b> 이하의 비용할인</li> <li>2. 거래가 있는 날로부터 <b>2개월 이내</b>에 결제하는 경우: 거래금액의 <b>1.2퍼센트</b> 이하의 비용할인</li> <li>3. 거래가 있는 날로부터 <b>1개월 이내</b>에 결제하는 경우(계속적 거래에서 1개월을 단위로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중간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것을 포함한다): 거래금액의 <b>1.8퍼센트</b> 이하의 비용할인</li> </ol> <p>※ "거래가 있는 날"이란 의약품 및 의료기기가 요양기관에 도착한 날을 말한다.</p> <p>※ 거래금액의 일부를 결제하는 경우에는 전체 거래금액에 대한 그 일부의 비율에 따라 비용할인을 한다.</p> |